

#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하태경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632
------------	------

발의연월일 : 2016. 8. 17.

발의자 : 하태경 · 권성동 · 김성원  
김성태 · 김세연 · 문진국  
신보라 · 엄용수 · 유기준  
정유섭 · 홍문표 의원  
(11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환경부장관이나 서울특별시장 등의 지원을 받아 배출가스 저감장치나 저공해엔진을 부착·교체한 자동차의 소유자가 해당 자동차의 등록을 말소하기 위해서는 해당 장치 등을 미리 반납하도록 규정하고 환경부장관 등은 해당 장치를 재활용·재사용하거나 매각하여 세입조치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자동차 소유자가 부착된 장치 등을 반납하는 데에는 해당 장치 등의 탈착·보관·택배 등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어 불편함을 끼치는 경우가 많으므로, 그 재활용·재사용 등의 가치가 상대적으로 적은 자동차 소유자에게는 이를 금전으로 대체하여 납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음.

이에 부착·개조 또는 교체된 배출가스저감장치나 저공해엔진이 보증 기간을 경과한 경우에는 이를 반납하는 대신 해당 장치 및 부품의 잔

존가치에 해당하는 금액을 금전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6조의4제4항 신설).

##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의4제6항을 제8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제5항 및 제6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5항) 중 “매각하여 이를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른 환경개선톤별회계의 세입으로 하고, 제24조제3항·제25조제6항에 따른 지원 및 저공해자동차 개발·연구사업에 필요한 경비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비에 충당할 수 있다”를 “매각하여야 한다”로 하며, 같은 조에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제3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부착·개조 또는 교체된 배출가스저감장치나 저공해엔진이 보증기간을 경과한 경우에는 이를 반납하는 대신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장치 또는 부품의 잔존가치에 해당하는 금액을 금전으로 납부할 수 있다.

⑦ 제4항에 따라 징수한 금액과 제6항에 따른 매각대금은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른 환경개선톤별회계의 세입으로 하고, 제24조제3항·제25조제6항에 따른 지원 및 저공해자동차 개발·연구사업에 필요한 경비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비에 충당할 수 있다.

제46조제1항제4호 중 “제26조의4제4항”을 “제26조의4제8항”으로 한다.

##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구조문대비표

개발·연구사업에 필요한 경비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비  
에 충당할 수 있다.

<신 설>

(7) 제4항에 따라 징수한 금액  
과 제6항에 따른 매각대금은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른 환  
경개선특별회계의 세입으로 하  
고, 제24조제3항·제25조제6항에  
따른 지원 및 저공해자동차 개  
발·연구사업에 필요한 경비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비에  
충당할 수 있다.

⑥ (생 략)

제46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 3. (생 략)

4. 제26조의4제4항에 따른 성능 점검결과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② ~ ⑤ (생 략)

(8) (현행 제6항과 같음)

제46조(과태료) ① -----  
-----  
-----  
-----.

1. ~ 3. (현행과 같음)

4. 제26조의4제8항-----  
-----  
---

② ~ ⑤ (현행과 같음)